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	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	□ 주문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□ 제안이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바로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□ 시정질문 일시 : 2003. 4. 28(월) 오전 10 : 00	의회사무국	본회의
2	2002 회계년도 예산결산 감사위원 선임	○ 일 시 : 2003. 4. 21(월) 10 : 00 제1차 본회의시 ○ 장 소 : 본회의장 ○ 대 상 : 5명 • 의장추천 : 3명 • 시장추천 : 2명 ○ 명 단 - 성남시의회 전이만 의원 - 경원대학교 교수 김경수 - 한경대학교 구수 이원희 - 성남시 고문 공인회계사 김길복 -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김연성	의회사무국	본회의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																				
3	성남시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	☐ 제안이유 · 국·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내시와 세입증감 등 여건변동으로 세입·세출 정리가 불가피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 ☐ 주요골자 (단위: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제1회추경 예산안</th><th>기 정 예산액</th><th>증 감 액</th><th>%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<td>939,085</td><td>893,102</td><td>45,983</td><td>5.2</td></tr> <tr> <td>일반회계</td><td>663,582</td><td>638,395</td><td>25,187</td><td>4.0</td></tr> <tr> <td>특별회계</td><td>275,503</td><td>254,707</td><td>20,796</td><td>8.2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제1회추경 예산안	기 정 예산액	증 감 액	%	계	939,085	893,102	45,983	5.2	일반회계	663,582	638,395	25,187	4.0	특별회계	275,503	254,707	20,796	8.2	기획예산과	각상임위
구분	제1회추경 예산안	기 정 예산액	증 감 액	%																				
계	939,085	893,102	45,983	5.2																				
일반회계	663,582	638,395	25,187	4.0																				
특별회계	275,503	254,707	20,796	8.2																				
4	성남시시정소식 발행조례중개정 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여 시민들 에게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시정소식지가 되고자 함. · 편집주간·부주간 및 편집원이 비전임 지방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른 보수지급 규정 삭제 ☐ 주 요 골 자 ·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(안 제6조 제2항) ·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(안 제6조 제3항) · 편집주간·부주간 및 편집원 보수지급 규정 삭제	공보담당관실	자치행정																				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5	성남시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어 당초 자치단체별 감사청구인수를 20세이상 “주민수 비율”에서 “인원수”로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 □ 주요골자 ·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“1,000명이상”을 “300명 이상”으로 개정	감사담당관실	자치행정
6	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「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 관리지침」이 시행됨에 따라 초과 현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8명은 2003년 8월 31일 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(부칙 제2조제3항)	총 무 과	자치행정
7	성남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(2003. 1. 20)이 개정되어 장려수당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분뇨·하수·폐수·쓰레기처리업무·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,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“월 200,000원”에서 월“270,000원”으로 개정(안 제4조)	총 무 과	자치행정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8	성남시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	□ 제안이유 ·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소규모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 자치센터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· 성남시의 중심지인 성남·여수동 집단공공용지 사이에 사유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며 · 백궁·정자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자동변전소부지 매각하고 · 성남동은 교통의 중심지이며 주택밀집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이 없어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는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을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· 금광아파트 재개발조성지역내 활용가치가 적은 사유지를 매각하여 효율성 높은 공용·공공용지 부지로 대체 조성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가. 취득(매입) · 토지 : 79필지 109,445㎡ 27,068,040천원 - 소규모공공용지 4필지 3,052㎡ 5,249,440천원 - 공공용지매입 74필지 106,093㎡ 21,218,600천원 -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1필지 300㎡ 600,000천원 · 건물 : 1동 561㎡ 150,000천원 - 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내 건물 매입 1동 나. 처분(매각) · 토지 : 7필지 9,376㎡ 4,290,364천원 - 정자동 변전소부지 1필지 4,655㎡ 1,829,415천원 - 금광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토지매각(특별회계) 2필지 2,559㎡ 1,422,900천원 - 금광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토지매각 4필지 2,162㎡ 1,038,049천원	회 계 과	경제환경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9	성남시도시가스 수요가기금설 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조례상의 목표보급율을 초과달성하였고, 근래 용자신청이 대폭감소하여 기금운용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동 조례를 폐지함	지역경제과	경제환경
10	성남시다목적복지 회관설치·운 영조례중개정 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지역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경비를 수탁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컴퓨터교육실의 이용료를 일반 시설이용료의 60%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시장은 수탁자의 지역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제5항) ·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여 수탁자의 안정적인 지역복지사업을 유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제2항) ·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함 (안 제11조) · 새로 건립된 상대원1동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(별표1) · 컴퓨터교육실의 이용료를 일반시설 이용료의 60%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(별표2)	사회복지과	사회복지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1	성남시방문보건 사업및치매환자 관리사업민간위 탁동의안	□ 제안이유 · 방문보건 및 치매환자관리사업 위탁운영으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주민의 가정을 방문 대상자 발견 및 등록, 질병관리 및 간호,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 등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민간위탁의 필요성 ·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양상의 변화로 재택 퇴원수의 증가 및 의료양상의 고급화로 인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의 접근성 저하로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문제 해결능력을 높여줌으로써 질병 예방 및 건강유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· 개 요 · 위탁기간 : 2003. 7. 1 ~ 2004. 12. 31 · 수탁업자 선정 :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기준안을 검토한 후 공개모집 · 위탁사업 : 방문보건 및 치매환자관리 사업 (각 구별로 1개 수탁기관 선정) · 소요예산 : 각 기관별 450백만원(시자체 사업) · 주요사업 내용 · 방문보건 사업 · 치매환자 관리사업 · 위·수탁 관련 기타사항 : 보건소 시설운영 및 사무추진	분당구보건소	사회복지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2	성남시청소년통행 금지구역·통행 제한구역지정및 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 구체적인 선도 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 제4호)	문화체육과	사회복지
13	성남시보육사업 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성남시보육위원회 "위원회의 구성"에서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는 위원으로 정비하고,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특수보육 등 활성화 추진 □ 주요골자 · 보육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"성남시의회장이 추천하는 2인"과"를 삭제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함(안제3조제3항) ·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 (안제15조제2항)	여성복지과	사회복지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4	성남시시립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청소년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을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청소년 문화공간(수련시설)을 조성(5개 시설로 증가)함에 따라 ·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과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센터와의 명칭이 불합리함으로 개관예정인 청소년수련시설과 함께 명칭 등을 변경하여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□ 주요골자 · “제명” 변경 및 목적 추가 · 청소년수련시설 위치 표시 · 시설물 확대 ·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담감 경감으로 다수단체 참여 유도	문화체육과	사회복지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5	성남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2001년 준공되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중인 성남제2종합운동장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사용료가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과 축구잔디구장 사용료(성남종합운동장, 성남제2종합운동장)를 조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코자 함. □ 주요골자 · 용어의 정의에 단체입장, 청소년, 어른의 대상 및 연령을 현실화하여 적용코자 함(안 제2조) · 사용료 감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코자 함(안 제13조) · 축구잔디구장의 사용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잔디구장의 사용기회를 확대코자 함(안 제23조) ·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28조) ·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(안 별표1내지 별표2, 별표5)	문화체육과	사회복지
16	성남시문화예술 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상의 불합리한 사항·개선할 사항등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	문화체육과	사회복지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7	성남시문화예술 공간및미술장식 의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	☐ 주요골자 · 위원장 변경 조정 : 부시장 → 업무담당 국장 · 위원 조정 : 업무담당과장 신설 · 간사 및 서기 변경조정 - 간사 : 문화체육과장 → 업무담당 주사 - 서기 : 예술담당 주사 → 실무담당자 ☐ 제안이유 ·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상의 불합리한 사항 · 개선할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개정하여 법 적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현상공모 당선작품 심의 생략 · 정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미술작품을 장식품으로 설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· 위원장 및 위원변경 조정 · 위원장 : 부시장 → 업무담당 국장 · 위원중 업무담당과장 신설 · 간사 및 서기 변경조정 · 간사 : 문화체육과장 → 업무담당 주사 · 서기 : 예술담당 주사 → 실무담당자	문화체육과	사회복지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8	산성유원지관리 민간위탁동의안	□ 제안이유 · 산성유원지 조성지역 내 각종 시설물 및 부지의 관리를 민간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쾌적하고 수준 높은 유원지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민간위탁 대상자 · 시설명 : 산성유원지 · 위 치 : 중원구 은행2동 534번지 일원 · 면 적 : 52,341.5m²(15,833평) · 위탁대상(규모) : 부지면적 26,991.4m²(8,165평) · 주요 협약내용 · 위탁관리대상 : 부지 및 시설물(안 제2조, 별표1) · 위탁업무범위 :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·관리·운영·신규설치·수선·변경·폐지 등 일체(안 제3조) · 협약기간 : 협약 해지 시까지(안 제4조) · 인력관리(안 제5조) · 징수된 주차요금 관리(안 제6조) · 위·수탁 비용(안 제7조) · 관리위탁의 해지사유(안 제12조) · 위탁시설물의 반환(안 제13조)	문화체육과	사회복지

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9	성남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)결정(세분)에 관한의견청취안	□ 제안이유 ·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30일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른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용도지역 변경(세분) 결정조서 <table border="1"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면 적(m')</th> <th rowspan="2">구 성 비 (%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기 정</th> <th>변경</th> <th>변경후</th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18,335,468</td> <td>-</td> <td>18,335,468</td> <td>100.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일 반 주 거 지 역</td> <td>제 1 종 일반주거지역</td> <td>-</td> <td>증)667,593</td> <td>667,593</td> <td>3.5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제 2 종 일반주거지역</td> <td>-</td> <td>증)9,782,210</td> <td>9,782,210</td> <td>53.35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제 3 종 일반주거지역</td> <td>-</td> <td>증)7,777,615</td> <td>7,777,615</td> <td>42.4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제 2 종 전용주거지역</td> <td>-</td> <td>증)118,050</td> <td>118,050</td> <td>0.64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구 분	면 적(m')			구 성 비 (%)	비 고	기 정	변경	변경후	계	18,335,468	-	18,335,468	100.0		일 반 주 거 지 역	제 1 종 일반주거지역	-	증)667,593	667,593	3.59		제 2 종 일반주거지역	-	증)9,782,210	9,782,210	53.35		제 3 종 일반주거지역	-	증)7,777,615	7,777,615	42.42		제 2 종 전용주거지역	-	증)118,050	118,050	0.64		도 시 과	도시건설
구 분	면 적(m')			구 성 비 (%)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 정	변경	변경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18,335,468	-	18,335,468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 반 주 거 지 역	제 1 종 일반주거지역	-	증)667,593	667,593	3.5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 2 종 일반주거지역	-	증)9,782,210	9,782,210	53.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 3 종 일반주거지역	-	증)7,777,615	7,777,615	42.4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 2 종 전용주거지역	-	증)118,050	118,050	0.6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	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(재해대책기금의 운용·관리) 제2항이 개정(대통령령 제17587호 2002. 4. 27)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대책기금 운용·관리조례표준(안)이 시달(2002. 5. 23)되어 ·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예치금액과 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을 별도 계좌로 운용·관리하고,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토록 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.	재난재해관리과	도시건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